##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75 발의연월일: 2025. 2. 19.

발 의 자:조지연·박준태·강승규

최수진 • 이인선 • 고동진

장동혁 • 박덕흠 • 강대식

엄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수당 및 활동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국회의원 직에 대한 과도한 특권이라는 국민적 인식과 함께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하여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당의 환수) ① 의원이 법원의 판결(의원의 임기 중 또는임기 전에 범한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으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 의원이 형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 지급제한 및 환수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가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4조의2(수당의 환수) ① 의원
	이 법원의 판결(의원의 임기
	중 또는 임기 전에 범한 범죄
	행위로 인한 형사재판으로 인
	한 경우를 말한다)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
	우에는 공소제기된 날부터 재
	판이 확정된 날까지 지급된 제
	7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
	비를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등을 환
	수하는 경우 의원이 형 확정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u>수 있다.</u>